第256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2005年9月14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

1.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3.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4.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
7.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6건)
9.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附議된案件

1.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 …… 2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5
3.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 5
4.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5
5.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5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재정경제위 원장 제출) …… 7
7.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이정일・이강래・홍미영・김부겸・한화갑・문학진・이상열・노현송・권오을・김우남・백원우・김석준・안홍준・김춘진・김영덕・문병호・양승조・박상돈・강기정・이상배・박세환・조일현・최규성・오영식・한병도・김교흥・이상득・유시민・정병국・유선호・김용갑・김효석・이근식・김홍일・이인제・우윤근・정의용・이종걸・정청래・정종복・홍문표・류근찬・신중식 의원 발의) …… 7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6건)[각 소관상임위원장(국회운영위원회 제외) 제출] …… 8
9.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제의) …… 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9
o 5분자유발언 …… 9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

석하고 지난 10일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0년 9월에 있었던 첫 번째 세계국회의장회의 이후 5년 만에 열린 것으로 세계 129개국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21세기 우리 인류의 공동 과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회의 첫날인 9월 7일 유엔총회장에서 여섯 번째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오늘의 모습을 설명드리고,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양측 정치권 간 대화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국회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하고 회담 성사를 위한 각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의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남북한과 미·중·일·러, 6개국 국회가 가칭 동북아의원회의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의 협력과 제휴를 강화해 나갈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의원 외교의 활성화와 의원 외교 연대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제의원연맹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변화무쌍한 현실에 세계국회의장회의를 매 5년마다 연다는 것은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 간격을 줄여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해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 참가 기간 동안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러시아·헝가리·캐나다·베트남·스위스 등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7개국 의회의 의장들과 별도의 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현안과 한반도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일본 참의원 오오기 의장과의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오오기 의장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중국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는 남북 관계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한 뒤 향후 양국 의회 간 교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의회 간의 분과 분야별로도 앞으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러시아 두마의 그리즐로프 의장과는 남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 6자회담 참가국 의회 간의 의원회의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러시아산 가스의 한반도 공급 방안 등 경제 협력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서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층 높아진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행한 저의 제안이나 각국 국회의장들과의 합의사항 이행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

1.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

(14시16분)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원장에 이용훈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동의 요청한 이용훈의 재산신고 사항 및 병역 사항은 지난 9월 1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회의자료의 기타 배부자료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용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명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이용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한명숙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명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법관 임명권,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 등을 가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후보자의 소신과 구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날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었고 영상 편집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보충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었고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으로 법무부 관계자인 임채진 검찰국장, 변호사 단체에서 이준범 변호사 및 방희선 변호사, 한국법학교수회를 대표해서 이광윤 교수, 법조기자인 이수형 기자,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및 강경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위원 등 일곱 사람을 출석시켜 사법부 개혁 및 사법부 독립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질과 업무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33년간 재직하면서 대법관으로 재판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재판 업무에서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법관으로 퇴직 후 지금까지 5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등 대통령 측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 등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등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후보자는 특히 탄핵사건의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법률가로서 관심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임한 것이고 그 전력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대법관 13인 중 9인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해당되어 대법관이 전면 재구성되는 실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향후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후보자는 후속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는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인 판단력, 인품을 제시하였으며 제청권 행사 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미리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문제로서 아직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셋째, 사법부 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5년간의 재야 경험을 통하여 법원에서 근무할 때 느끼던 것과는 달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하여 불신이 있고 법원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점에 관한 여러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법원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향후 법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행정부 은행 등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참작할 것이고 국민이 쉽게 판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며 국민의 얘기를 들어주는 통로를 넓히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부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는 형사구속사건에서 주로 생기는 문제이므로 구속사건을 대폭 줄이고 평생 법관으로 재직하는 문화를 형성시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구속은 특히 서민과 해당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이므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의 공정한 인사개혁을 위하여 법관 인사 제도나 근무평정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집행기구를 만들어 법관 윤리 전반에 걸쳐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제적 추세인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배제가 필요하지만 소급 적용은 헌법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대하여 법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어떤 형태이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한 것이고 추후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감청 사건이나 대통령의 연정 논의에 대하여 정치적 사안이므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섯째, 후보자의 도덕성 등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후보자가 2002년 3월에 구입한 연립주택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하여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참고인들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부 참고인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개혁을 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적인 의식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경우 영상편집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친숙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 등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법원장(이용훈)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원장(이용훈)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릴 것은 디지털본회의장 구축으로 전자무기명투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되는 국회법 개정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종전과 같은 수기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유선호 의원, 조일현 의원, 최용규 의원, 김양수 의원, 김정훈 의원, 정두언 의원, 이승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28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4분 투표종료)

○의장 김원기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7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바 276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한 분의 의원께서 투표용지를 투표

함에 넣는 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명패수보다도 적은 1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212표, 부 61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서 대법원장(이용훈)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3.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4.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5시0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성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국회법상 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결산심사의 심사결과를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본 의원이 보고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과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예결위의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심사 그리고 소위원회의 활동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511건의 시정요구사항 등을 채택하였고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6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타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시정요구 사항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권위원회 임차료 지원의 부적정에 대한 징계요구 등 징계요구 2건, 국고보조사업 관리 감독 강화 등 시정요구 211건, 과도한 이·전용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등 제도개선 요구 195건을 비롯해 총 511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354건보다 약 44%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소관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업 집행과 댐 건설 로비 의혹 등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시 동 사안을 철저히 감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청구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6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청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도 말 집중적인 예산 집행은 낭비의 의혹이 있으므로 연도 말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청구하고, 둘째 예비비 배정 전 사업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등 행정 편의적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청구하며, 셋째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예산의 사용 목적에 벗어난 과다한 규모의 이·전용과 자체기금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넷째 국가고시센터 신축사업의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의결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한 의혹이 있어 동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

며, 다섯째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와 특혜 지원의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여섯째 노인요양보호시설과 관련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시설 운영 주체와 종사자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낙후지역 개발 관련 사업의 부처 간 중복 등 사업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외국환평형기금에 따른 손실의 원인과 책임소재 등의 규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결위원회는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 회계연도 이전 2개 연도 연속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결산의 국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0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전 2개 연도인 02년도 및 03년도에 시정요구하였음에도 04년도에 재차 시정요구된 사항은 그 이행사항 및 조치 결과를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0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보고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투표 방식에 대해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투표는 의석 책상 서랍에 있는 옛날 우리가 쓰던 종전의 버튼식 전자투표 장치를 이용하지 마시고 새로 설치한 단말기상의 터치스크린 방식으로만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3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3인, 기권 3인으로서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9인, 기권 2인으로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5시1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윤건영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 총액을 기본 재산의 20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보증 공급 확대로 인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대위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4회계연도 결산에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함으로써 운용배수를 20배로 맞추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추정대손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실제 운용배수가 67배에 이르게 되는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히 초과하게 된 배경 및 원인을 밝혀 동 기금의 조속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등의 소요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처벌 목적이 아니라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을 얻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

(재정경제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01인, 반대 32인, 기권 11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이정일·이강래·홍미영·김부겸·한화갑·문학진·이상열·노현

송·권오을·김우남·백원우·김석준·안홍준·김춘진·김영덕·문병호·양승조·박상돈·강기정·이상배·박세환·조일현·최규성·오영식·한병도·김교흥·이상득·유시민·정병국·유선호·김용갑·김효석·이근식·김홍일·이인제·우윤근·정의용·이종걸·정청래·정종복·홍문표·류근찬·신중식 의원 발의)

(15시2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박순자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재정융자금은 도시지역 주민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전기공급을 위한 재원 중 재정융자금제도를 폐지하고 종래 주민이 부담하고 있던 재정융자금원리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수정내용을 보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재정융자금에 의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금의 상환금 산출방식을 계약전력 3㎾를 1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따른 일부 지역주민의 부담을 현행보다 현저히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정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무이자로,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의 부담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산업자원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6건)[각 소관상임위원장(국회운영위원회 제외) 제출]

(15시2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규정에 따라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6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명규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461개 기관으로 2004년도의 456개 기관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153개의 기관이고,

둘째,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26개 기관이며,

셋째,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17개 기관입니다.

넷째,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인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65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6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국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따져보고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년도 국정감사가 과거 어느 해보다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9.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제의)

(15시3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9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 위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의원 명단은 끝에 실음)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4분)

○의장 김원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원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장경수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일제 강점하에서의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민족 화합의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어 광복 60주년의 기쁨을 노래하는 지금까지도 러시아연방 동쪽 끝에 있는 섬 사할린, 그곳에는 1945년 해방 직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탄광과 벌목, 도로공사 등으로 혹사당하다 광복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60년여를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우리 동포 4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조국은 광복되지 않은 것입

니다.

이들은 1999년부터 사할린 동포 1세대 중 일부가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기 전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일본 정부의 외면과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러시아연방의 소수민족으로 방치되면서 우리 말과 글을 거의 잊어 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건장한 청년과 아리따운 처녀들은 이제 고희를 훌쩍 넘긴 힘없는 노인이 되어 버렸고, 그들의 2세, 3세들은 조상의 뿌리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한 많고 힘든 역정을 이겨 낸 그들은 이제 고향 땅에 뼈를 묻고 자식들이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생전에 그리운 고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감소를 우려하여 다른 민족의 이방인들을 이민받는 문제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 사할린 동포들이 그들의 고향 땅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국적을 회복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데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사할린 동포와 같은 재외 난민이 발생한 나라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핀란드 그리스 일본 등 많은 나라는 이미 이들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그들의 귀국과 적응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생환하지 못한 영령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 가며 유골을 찾고 있으며,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할린 동포들 중 1000여 명이 영주귀국하여 있으나 그들은 자식, 손주와 생이별하여 외롭고 쓸쓸히 노부모만이 고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동토의 이국땅만 못할지 모릅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 먼 이국땅에서 한평생 보내게 하더니 이제는 가족 간의 생이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영주귀국을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은 현재 국내에 들어온 사할린 동포들이 사망해야, 입주공간이 생겨야만 귀국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가 힘이 없어 희생당하고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고향땅을 밟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가족 간 생이별의 아픔과 러시아인으로서의 삶을 강요해야 합니까?

사할린 동포들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은 일제 강점기 때의 제국주의 일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영주귀국 제도는 죽기 전 따뜻한 밥 한 끼에 지나지 않는 현대판 고려장일 뿐 진정 그들이 원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한민족 단군의 자손이며, 여러분들의 친지나 이웃이었던 분들입니다. 이제라도 국가적 책무를 바로하여 사할린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아로서의 긍지와 희망 속에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이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초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발언을 하게 되는 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현장에서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처럼 어려운 이해 갈등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볼 때 제17대 국회에서 저희 교육위원들은 많은 노력 끝에 거의 80% 정도의 의견을 좁혀 왔다고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욕구가 가장 강한 부분은 바로 비리 사학의 척결이고 사학의 투명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만 한정하여 봤을 때 저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에 거의 99% 가까운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먼저 임원 친인척 비율을 이사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초과금지를 낮추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리 임원 복귀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임면 공개전형 실시 및 학교 및 대학 예·결산 공시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 척결 및 투명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의 강화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감사, 한나라당은 공영감사로 매우 유사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학 비리 척결과 투명 경영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양당 간의 의견 차이도 아직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지배구조의 개편을 강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데서 양당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까지 사학의 투명성을 철저히 높이겠다고 했을 때는 사학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 옛말에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는 비리 척결이라는 눈앞의 현안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사학 발전의 백년대계를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사학의 자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은 우리 사학이 세계적인 사학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양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하고 학생들의 학교배정 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님들 중에는 이것이 평준화 틀을 깰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좋은 교육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무조건 고수해야 할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과거의 비평준화와 현재의 평준화 정책의 장점만을 따온 교육 선진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선진화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대비하여 사학을 포함한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지역대토론회, 이해당사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립학교법의 양보안, 협상안을 개정안으로 제출하였고 교육선진화 3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과 분란의 진원지가 국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또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부디 사립학교법이 교육적인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 선진화 3법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소위 안기부 X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착수된 검찰 수사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의 핵심을 속 시원하게 보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정원마저 불법도청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였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진실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안기부 X파일로 인하여 지난 어두웠던 시절 검찰을 비롯한 권력과 재벌 그리고 일부 언론 사이에 존재했던 권·경·언 유착구조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국민들의 결의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작금의 상황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서 정략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현재 안기부 X파일 사건은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언론사

사주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떡값 검사가 검찰 조직의 지휘라인 선상에 버젓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한다 해도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안기부 X파일 공개를 위한 2개의 특별법과 하나의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관계 3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타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한계만을 정략적으로 지적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모든 위원들께서는 자당의 법안 내용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발언과 질의를 무차별적으로 쏟아 냈습니다. 법안은 냈지만 처리 의지는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 편에 서서 조금씩 이해하고 양해하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대안을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사생활을 제외한 공익을 위한 안기부 X파일의 내용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는 X파일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 또는 사회적·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기부 X파일 공개와 철저한 수사가 사건 해결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후 불법도청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어두운 시대의 아픈 흔적 속에서 우리 정치권이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진실을 향한 의지와 새 역사를 향한 열정을 모아서 안기부 X파일의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이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시급히 마련하는 데 나서야 되겠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군현 의원입니다.

저는 과연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진심으로 바라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관련 법률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상호 의견이 다른 부분, 접근이 가능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상호 접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있음에도 최근 임태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건전 사학 발전을 위해 최대한 고려하여 합의 처리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온 여당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당초 제안한 안, 다시 말해서 개방형 이사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교사·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안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수용하기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협상의 자세입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나라당이 여당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한나라당 개정안에는 감사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비리사학에 대해 공영이사를 파견하는 등 사학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정치 공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440만 명의 학생이 있고 1000만 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대단히 중차대한 법률안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 관계법인 사학법의 전체 회의 회부를 고집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합의보다는 표결로써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협상과 타협 그리고 상생의 장인 국회에서, 그것도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립학교법을 표결로써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자는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안과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양보와 타협의 정신만 발휘한다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안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벗어나서 서로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육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진정한 한국 교육의 발전을 고려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기를 여당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남양주갑 출신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 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도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왜 개방형이사제를 우리 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이것이 과연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16일까지 심사기일을 의장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 과연 교육상임위는 국회법에서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논의를 했는지, 논의를 못 했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이사 총원 35명입니다. 당연직 대학총장이고, 선출직 총 34명이고, 8명은 반드시 동문회에서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총 40명입니다. 선출직이 13명이고 선출권자는 동문회와 학생회입니다.

하버드 대학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게이오 대학도 비슷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립학교법을 거의 모방하다시피 한 그런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38조에 보면 학교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이 있는 일본도 그렇고 사립학교법이 없는 서구 선진국 대학 같은 경우에도 공히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11명 정도 이사를 선출할 때 개방형이사는 우리 당 안대로라면 4명이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을 추천하는 주체는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학운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지역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학부모 대표가 46%입니다. 교사가 36%이고, 지역 대표가 17%입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또 세분해 보니까 교총 출신이 71%입니다. 전교조 출신이 15%입니다. 한교조가 0.3%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이사진 구성일 경우에 개방형이사 4명이 진출할 경우 교총은 1명이 진출하게 되고 전교조는 0.2명이 진출합니다.

전교조 1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52명 정도의 이사진 숫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보면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교수는 자기 학교의 이사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0.2명의 숫자조차도 교사나 교수가 아닌 이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간에서 주장하는 이 사립학교법이 통과되고 개방형 이사제가 되면 전교조 세상이 된다, 그리고 기존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복된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총의 경우가 전교조보다 5배 정도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다 하고 있고 일본도 법률로 보장하고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채택되고 법률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학법인에서 주

장하고 있는,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경영권의 침해나 전교조의 득세나…… 이런 논리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16일까지의 심사기일 지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여야 간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9월 9일이었습니다. 우리당 정봉주 간사님하고 한나라당 이군현 간사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위원이 사인을 했는데 한나라당 간사님인 이군현 위원님께서 사인하시기 직전에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오시더니 간사 간의 구두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내용을 보면 임태희 의원님이 발의한 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우리당 안과 김영숙 의원안을 합쳐서 전체 상임위로 올리자는 합의였는데 이것을 파기했고, 12일도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나라당이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마음을 열고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잣대로 서로 만나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국회법에서 보장된 절차대로 처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의원님들 또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오늘, 저는 올 하반기 농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자 정기국회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쌀 협상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쌀 협상 비준안이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노동당이 상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쌀 협상이 이면합의로 얼룩졌고, 실패한 협상이라는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상정을 위한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이면합의 파문 이후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협상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가운데 쌀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분석보고서조차 하나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17일 내놓은 소위 국내 보완대책이 기존 대책을 포장한 것에 불과함에도 정부 여당은 마치 농업계의 요구를 대다수 수용했음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농정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농민단체와 이견이 심각함에도 마치 합의된 듯이 발표하여 오히려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는 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쌀을 지키기 위해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중국산 사과·배, 아르헨티나의 구제역이 발생한 쇠고기, 오렌지 등 각국과의 양자합의 결과 원문은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을 지키기 위해 사과, 배, 오렌지, 쇠고기 등 쌀과 전연 상관없는 품목까지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 협상에서 패키지로 연계된 합의문 모두가 국회의 비준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준안으로 올려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쌀 협상을 다루어 온 농해수위의 의견서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농림해양수산위가 쌀 부문에 대한 주관상임위입니다. 아무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라 하지만 주관 상임위의 의견이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급하다고 졸라댄다고 해서 그저 정부 일정에 맞추어서 급급하게 이런 안건을 상

정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체신을 잃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쌀 협상은 명백히 실패한 협상이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였고 이면합의로 얼룩진 협상일 뿐만 아니라 쌀 협상의 최대 피해자인 농업계와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진행한 밀실협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 쌀 협상은 명백히 실패한 협상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12월 DDA 협상 이후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12월 예정된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쌀농업에도 훨씬 유리해지는데, 지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지난해 쌀 협상 결과의 독소조항 때문에 DDA 협상의 유리한 결과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18일 끝나는 DDA 협상 직후 국익을 고려하여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올해 구매하기로 약속한 쌀은 내년 2월까지 매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수입 일정이 2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제소당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 일각에서는, 전라도 경남 경북 이런 지역에서는 쌀값이 하락하여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했던 예전과 비하면 지금은 단경기이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이 통과되었을 때를 예견해서 쌀값들이 대단히 많이 떨어지고 불안해하고, 농협 RPC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서 추석 이후에 국회 비준 상정을 서두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야기만 듣고 여기에 급급하실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농업은 하늘과 자연과 인간의 3부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 산업인 것을 감안하시고, 농업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부의 주장이나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농업계나 민주노동당, 또 농촌지역의 소수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셔서 심도 있는 그런 협상 과정을 밟아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추석 잘 지내시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에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이계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의원 한 3, 4분이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많이 지켜 주신 민주노동당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린당도 몇 분 계시는데, 특히 늘 자리를 지켜 주시는 김재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 발언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올 연휴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서 직장인들은 퍽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달력을 미리 보니까 한 9일을 놀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휴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잠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시작해서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있고 예전에는 10월이면 국군의 날 놀았고 한글날 놀았고 심지어 유엔에 가입하고 싶어서 유엔데이를 다 놀았습니다. 세계에 유엔데이에 논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4월 초파일 놉니다. 크리스마스 놉니다, 세계적 종교기념일이지요.

또 거기에 주 5일 근무제로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놉니다. 직장인들은 1년에 거기에다 평균 닷새 정도 이상의 휴가가 보태집니다. 또 거기에 설날연휴 사흘, 추석연휴 사흘, 또 기업에 따라서는 징검다리 휴일인 경우에는 연속 놀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웬만한 회사는 창립기념일에 놀고 노조 창립일에 놀고 남자들까지도 육아휴가를 받

습니다. 합산해 보면 한 120일이 좀 넘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많아도 농어민과 또 자영업자들은 사실 쉬지도 못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기에, 이 많은 휴일에 그래 인류의 문화유산인 한글날을 경축할 기념일 하나 만들 자리가 없다는 말인지요? 의문을 품습니다. 너무합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만든 나라, 그 나라인 한국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한글과 세종대왕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네스코는 1989년에 '킹 세종 프라이즈'를 만들어서 해마다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공적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뽑아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서도 지난 1996년에 세종대왕의 천문학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을 기려서 일본의 천문학자가 발견한 소행성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성'이라고 명명을 했더니 '세종'이 누구냐고 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 0%에 가깝습니다. 우리를 문명·문화국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 한글을 창제한 그날 하루를 국경일로 만들자는데 즉 그 많은 휴일에서 하루쯤 빼고라도 국경일로 하자는데, 입만 열면 문화대국을 외치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께서 외면하시는 일이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야당, 한나라당 의원인 저로서 찬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기남 의원님께서 법률개정안을 내셨지요? 열린우리당인 신기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경일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몇몇 의원의 이견으로 국회 내에 구천을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뜻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더 놀면 7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온다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면서 경제계가 로비를 하는 모양인데 한글날에만 7000억 원의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 손해가 난다면 기존의 그 많은 휴일을 조정하면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창제자, 즉 만든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또렷이 남아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 한글, 그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한글날은 겨우 기념일이 아니라 국경일이 돼야 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 옛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변방의 역사라니까 전 난리를 떨다가 요즘은 그것도 고구려 어쩌고 하는 모임만 있으면 예전처럼 관계 학자들만 초라하게 모인답니다.

그뿐입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서 시마네현이 떠드니까 우표까지 만들고 독도바위에 금이 갈 정도로 앞 다퉈서 방문을 하더니 벌써 지쳐서 요즘 다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혹시 중국이 다시 '한글은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이 쓰던 잡동사니 언어인데 그 문자를 정리한 것이 한글이다' 이렇게 해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한 사흘 연휴를 만들자고 법석을 떨지 모르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세계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경일 만들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의장 김원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성 명	교섭단체명	비 고
강기정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춘진	열린우리당	
이기우	열린우리당	
문병호	열린우리당	
유필우	열린우리당	
장향숙	열린우리당	
고경화	한나라당	
박재완	한나라당	
안명옥	한나라당	
이성구	한나라당	
정화원	한나라당	
현애자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3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3인)

김충환	이종구	이혜훈

기권 의원(3인)

심재철	정화원	최인기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33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 진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3인)

김기춘 김양수 김충환 김형오
박찬숙 심재철 안홍준 엄호성
윤건영 이종구 이한구 이혜훈
정화원

기권 의원(2인)

김정부 배일도

(정성호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48인, 기권 의원 2인임)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 진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 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9인)

김기춘 김무성 김병호 김영덕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형오
박근혜 박찬숙 배일도 송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엄호성 윤건영 이계진 이종구
이한구 이혜훈 임태희 전재희
정종복 정화원 주호영 최병국
허태열

기권 의원(2인)

박세환 이병석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36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0인)

김종률　노웅래　서갑원　선병렬
우상호　이강래　전재희　정덕구
최재성　홍창선

기권 의원(1인)

전병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32인)

강성종　강혜숙　김선미　김영덕
김영주　김우남　김재원　김재윤
김종률　김현미　김희선　문학진
선병렬　신계륜　신중식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유선호　유시민
이미경　이영호　이호웅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최규성
최용규　최재성　한광원　한병도

기권 의원(11인)

김영춘　김형주　박영선　송영길
심재덕　유인태　유재건　이목희
이상민　이인영　제종길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定法律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9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륜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웅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봉 주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김 태 홍

○출석 의원(28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륜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청가 의원(14인)

강기정 권영세 김애실 김영숙
김재홍 김홍일 박형준 변재일
손봉숙 안명옥 안택수 이계경
이종걸 조배숙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해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법무부장관	천정배
국방부장관	윤광웅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농림부장관	박홍수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출석 정부위원

과학기술부차관	최석식
통일부차관	이봉조
외교통상부제1차관	이태식
산업자원부제1차관	조환익
정보통신부차관	노준형
해양수산부차관	강무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남궁석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박혁규	경기 광주	한나라당	2005. 9. 9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덕규

2005년 9월 4일 출국 시부터 의장 귀국 시까지

(9월 4일)

○특별위원장 선임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9월 1일)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안영근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5일간)

(9월 5일)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우윤근	열린우리당	2005. 9. 1
	장윤석	한나라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서재관	행정자치	건설교통	열린우리당	2005. 9. 7

○**의안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9. 1 김양수·김기현·권오을·이재오·이성권·안홍준·김정훈·김재경·나경원·정종복·원희룡·김희정·박승환 의원 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9. 1 김양수·김기현·원희룡·안홍준·권경석·박계동·박승환·이성권·김희정·이계진·김문수·홍준표·유기준·심상정·김학송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5. 9. 1 강창일·신학용·배일도·김태홍·김재경·노현송·엄호성·이해봉·임종인·우제창·황우여·박승환·심재철·이윤성·이상경·최규식·박찬숙·김우남·이호웅·심재덕·정성호·신국환·고진화·손봉숙 의원 발의)

9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民防衛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5. 9. 1 강창일·신학용·배기선·배일도·최재성·노현송·엄호성·임종인·안민석·정병국·박찬숙·이호웅·김한길·우제창·김원웅 의원 발의)

9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05. 9. 1 김재경·박근혜·이계경·박세환·김재원·이혜훈·고경화·박재완·이성권·김명주·이인기·심재철·김충환·나경원·진수희·임인배·김학송·최구식·김희정·박계동·정병국·엄호성·정희수·최경환·권영세·김석준·김양수 의원 발의)

9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圖書館및讀書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1 박형준·김정훈·김충환·김양수·안홍준·권오을·이성권·김기현·박승환·정병국·김재경·김희정·이계경·엄호성·김석준·이계진·이상배·박계동·권철현·이주호·정희수·이재오·고조흥·정의화·원희룡·김병호·허천 의원 발의)

9월 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5. 9. 2 최규식·김태홍·김종률·정봉주·이시종·김성곤·지병문·전병헌·안민석·유선호·이상경·조성래·윤호중·김한길·장복심·박기춘·강창일·강기정·서재관·민병두·이강래·심재덕·정성호·정청래 의원 발의)

9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05. 9. 2 김낙성·신중식·김우남·홍문표·이인제·류근찬·심재덕·김재원·김영덕·장경수 의원 발의)

9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뉴타운특별법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05. 9. 2 김학송·박재완·서병수·임태희·한선교·이혜훈·최경환·주성영·김재경·김덕룡·황진하·허천·유기준·김정권·김영선·장윤석·권철현·김문수·송영선 의원 발의)

9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2 나경원·김재경·임태희·고경화·이명규·안택수·강성종·심재철·안민석·노현송·전병헌·김영춘·이근식·김석준·이계경·김정권·고진화·이주호·정성호·김충환·정화원 의원 발의)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홍준표·박계동·이윤성·박세환·박종근·신상진·이군현·김문수·이재오·이성구·최구식·박승환·유승민·박재완·서병수·심재철·김양수·김충환·이명규·김정훈·이강두·김희정·전여옥·송영선·김재경·안경률·정화원·김태환·정종복·정갑윤·박형준·김정권·고조흥·김무성·곽성문·심재엽·안홍준·정병국·김영덕·이상득·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2 나경원·김명주·남경필·이명규·박세환·김기현·유승민·임태희·이계경·김정훈 의원 발의)

9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2 나경원·엄호성·안민석·고진화·김정권·이계경·김재경·윤건영·박순자·이인기·김영춘·김충환·정화원 의원 발의)

9월 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2 김명자·조일현·이상경·정의용·김춘진·유선호·정몽준·김덕규·김혁규·신국환·이강래·최재천·이용희·김성곤·우제항·유재건·구논회·안택수·나경원·이계경·김애실·서상기·이화영·노현송·박찬석·공성진·강창일·이호웅·이근식·박영선·유필우·홍재형·김성조·김종률 의원 발의)

9월 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2005. 9. 2 정부 제출)

9월 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9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地域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엄호성·이영순·이재오·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인기·황우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엄호성·이영순·이재오·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인기 의원 발의)

保健醫療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박상돈·심상정·엄호성·이영순·이재오·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인기·황우여 의원 발의)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박상돈·심상정·엄호성·이영순·이재오·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인기·황우여 의원 발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엄호성·이영순·이재오·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인기·황우여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엄호성·이영순·이재오·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인기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엄호성·이영순·이재오·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인기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엄호성·이영순·이재오·조승수·천영세·최순영·황우여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김선미·우제창·박재완·정성호·김부겸·황우여·송영길·정장선·유선호·우윤근·염동연·우제항·이광철 의원 발의)

이상 9건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최경환·김재원·이인기·유승

민・이혜훈・김종률・박형준・이상배・김정권・곽성문・권오을 의원 발의)

9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김교흥・이시종・정봉주・황우여・최재성・박계동・노현송・송영길・우제창・이해봉・김한길・배일도・엄호성・이영호・강창일・박찬숙・박기춘・안상수・고조흥・심재철・한광원・김태년・서재관・김우남・김혁규・신학용・정성호・최인기・이계진・이윤성・김종률・신상진・허태열・제종길・박상돈・이광철 의원 발의)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학생의 날」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

(2005. 9. 5 맹형규・김태홍・박세환・배기선・김석준・배일도・엄호성・황진하・이계진・손봉숙・김충환・정성호・김영춘・김재원・이인기・이혜훈・박재완・심재철・이병석・안상수・이해봉・고조흥・이상열・김효석・염동연・신상진 의원 발의)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石炭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고진화・이해봉・심재철・황우여・엄호성・김영춘・정성호・김재홍・이근식・이시종・박재완・안상수 의원 발의)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법안(곽성문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곽성문・김석준・안택수・한병도・엄호성・김재원・서상기・이성권・김정권・김충환・안경률・김형오・이윤성・김태환・박형준・김문수・정의화・박진・박성범・정갑윤・이인기・이해봉・최경환・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7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김재원・김석준・김양수・김영덕・김충환・김태환・박종근・안명옥・안택수・이상배・이성구・정갑윤・한선교・허태열 의원 발의)

9월 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이호웅・김동철・김한길・노영민・박상돈・원혜영・윤호중・장경수・정장선・조경태・주승용・이강래 의원 발의)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이호웅・이낙연・김학송・박상돈・허태열・조경태・주승용・장경수・노영민・김한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박형준・김기현・박승환・이윤성・이성권・김양수・박세환・김재원・엄호성・정병국・박찬숙・안상수・이해봉・박재완・나경원・홍준표 의원 발의)

9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國家情報院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유기준・김재원・박세환・엄호성・안명옥・황우여・이계경・유승민・심재철・박재완・신국환・이인기・박찬숙・이혜훈・신상진 의원 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유기준・김재원・박세환・엄호성・안명옥・황우여・이계경・유승민・심재철・박재완・이윤성・정성호・이인기・최경환・배일도・이혜훈・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7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5. 8. 18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5. 9. 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2005. 9. 7 서재관・노현송・박상돈・정성호・김영춘・김재홍・심재덕・이혜훈・김종률・우제창・고조흥・김태홍・엄호성・이해봉・이근식・이시종・김정권・이윤성・박기춘・조일현・이인기 의원 발의)

9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05. 9. 7 조배숙・박명광・정봉주・한명

숙·최재성·정성호·김영춘·유승희·정청래·이인영·우제창·이광철·서재관·안병엽·한병도·이화영·유기홍·김교흥·지병문·백원우 의원 발의)

9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靑少年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

(2005. 9. 7 이근식·신학용·박상돈·유승민·이재오·이시종·심재덕·배일도·서재관·이상경·엄호성·심재철·이해봉·안병엽·김현미·노현송·안상수·고조흥·손봉숙·김원웅·오제세 의원 발의)

9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05. 9. 7 김부겸·임태희·신기남·정병국·구논회·이호웅·이근식·백원우·민병두·이강래·한명숙·서갑원·김동철·제종길 의원 발의)

9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홍문표·신상진·정문헌·임인배·강재섭·김선미·정진석·김정권·박상돈·엄호성·진수희·이인기·안상수·신중식·이해봉·김명주·김낙성·정병국·홍준표·김우남·이규택·안택수·김재원·이시종·한화갑·이계경·장복심·신국환·제종길·이상득·김영덕·김효석·배일도·이호웅·유기준·고조흥·박세환·김재경·류근찬·안홍준·김광원·고경화·정희수·이상배·안경률·장윤석·박승환·이윤성·맹형규·김무성·한선교·김학송·권경석·허천·송영선·허태열·이진구·최병국·박진·주성영·유재건·강기갑·공성진 의원 발의)

민간조사업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이상배·유기준·유정복·엄호성·최경환·곽성문·박재완·권오을·이영호·심재철·임인배·이인기·허천·안홍준·정희수·김석준·박형준·김영덕·이근식·박찬숙·이강두·김광원·김태환·전여옥·박계동·이시종·조성래·이성권·고경화·안택수·박순자·김우남·이진구·황우여·김명주 의원 발의)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박형준·이성권·김양수·김재윤·엄호성·정병국·홍문표·김재원·이명규·이병석·나경원·남경필·박재완·홍준표·심재철·안상수·김희정·박세환·허천·이인기·박찬숙 의원 발의)

地方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박형준·이성권·김양수·김재윤·엄호성·정병국·홍문표·김재원·이명규·이병석·나경원·남경필·박재완·홍준표·심재철·안상수·김희정·박세환·허천·이인기·박찬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심재엽·김효석·홍준표·한화갑·김부겸·이상경·김정훈·이용희·김희선·김광원·맹형규·유기준·허태열·김명주·김종률·신중식·이인제·김무성·김정부·이계진·김병호·이근식·정병국·이강두·이성권·김동철·이정일·이혜훈·박상돈·김낙성·이인기·주승용·홍재형·권오을·임종석·권경석·신국환·고흥길·이방호·김춘진·변재일·이상배·조일현·노영민·임인배·김우남·엄호성·진수희·허천·안병엽·김영덕·고조흥·김정권·곽성문·신상진·정진석·안상수·이해봉·염동연·김낙순·권선택·서상기·류근찬·전여옥·박찬숙·이명규·이경재·박종근·최연희·김성곤·고경화·홍문표·김학송·박세환·김재경·서재관·심재덕·안택수·김충환·김재원·최인기·박계동·최경환·장윤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김양수·김기현·원희룡·안홍준·권경석·박계동·박승환·이성권·김희정·이계진·김문수·홍준표·유기준·정병국·김재경 의원 발의)

9월 9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채수찬·김명주·김양수·김종

률・김재원・김혁규・노영민・박기춘・박승환・심재엽・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시종・이인기・최규성・최인기 의원 발의)

9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채수찬・김명주・김양수・김종률・김재원・김혁규・노영민・박기춘・박승환・심재엽・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시종・이인기・최규성・최인기 의원 발의)

9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채수찬・김명주・김양수・김종률・김재원・김혁규・노영민・박기춘・박승환・심재엽・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시종・이인기・최규성・최인기 의원 발의)

9월 9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이상배・유기준・유정복・엄호성・최경환・곽성문・박재완・권오을・이영호・심재철・임인배・이인기・허천・안홍준・정희수・김석준・박형준・김영덕・이근식・박찬숙・이강두・김광원・김태환・전여옥・박계동・이시종・조성래・이성권・고경화・안택수・박순자・김우남・이진구・황우여・김명주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윤건영・김문수・임태희・김재원・안상수・박재완・엄호성・심재철・박세환・허천・이인기・고조흥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이혜훈・김학송・최경환・서병수・박재완・정희수・안홍준・정갑윤・김병호・허태열・김태환・임인배・김양수・안택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장영달・서재관・이영순・노현송・안민석・김태년・김종률・윤호중・우제창・이은영・정봉주・노영민・김재윤・유선호・배일도・김재홍・김선미・강창일・김태홍・문학진・강혜숙・이근식・김한길・이시종・정청래・이원영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김영선・엄호성・김재원・김양수・안상수・이윤성・이인기・김태년・박성범・황우여 의원 발의)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이혜훈・박재완・서병수・허천・정희수・안홍준・정갑윤・김병호・허태열・김학송・김태환・임인배・최경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최재천・주성영・주호영・김재경・천정배・양승조・우윤근・장윤석・정성호・선병렬・최용규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김낙성・신중식・김우남・홍문표・조일현・이인제・류근찬・심재덕・김재원・김영덕・이정일・강기갑・이시종 의원 발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김춘진・이해봉・이원영・문병호・이인기・이은영・배일도・서재관・강기갑・조승수・고조흥 의원 발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2005. 9. 9 정부 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이영호・한광원・이상배・이정일・신중식・우윤근・장경수・조일현・김우남・최성・염동연・이시종・윤원호・신학용・안병엽・김교흥・김기현・안홍준・안민석 의원 발의)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이영호・한광원・김교흥・이상배・이정일・신중식・우윤근・장경수・조일현・최성・염동연・이시종・문병호・윤원호・신학용・안병엽・안홍준・안민석 의원 발

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이영호·한광원·이상배·이정일·신중식·우윤근·장경수·조일현·최성·염동연·이시종·윤원호·신학용·안병엽·김교흥·안홍준·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行政規制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유기준·박세환·엄호성·김충환·양형일·최구식·이성권·권철현·서병수·박형준·박승환·이혜훈·나경원·유정복·김양수·진영 의원 발의)

9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전병헌·김태년·조일현·김태홍·박상돈·노현송·박기춘·정청래·황우여·엄호성·이영호·노영민·정성호·김재홍·김영춘·이광철·김한길·선병렬 의원 발의)

9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전병헌·엄호성·김태홍·서재관·김재홍·김종률·이영호·노영민·조일현·선병렬 의원 발의)

軍事施設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박세환·이해봉·고조흥·배일도·김재원·김재경·엄호성·강길부·유정복·황우여·안경률·이윤성·정희수·박상돈·서병수·조일현·박재완·이인기·정병국·허천·고진화·박찬숙·이재웅·심재엽·정문헌·진수희·김충환·박순자·김명주·이주호·이계경·김영덕·진영·나경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都市가스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황우여·박성범·이재오·이상배·심재철·엄호성·이군현·김재원·고조흥·안상수·진수희·백원우·김석준·맹형규·박찬숙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황우여·박성범·이재오·이상배·심재철·엄호성·이군현·김재원·고조흥·안상수·진수희·백원우·김석준·맹형규·박찬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2005. 9. 9 정부 제출)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정병국·고조흥·김기현·김재경·김재원·김재홍·김충환·나경원·박상돈·박재완·박형준·신상진·안상수·엄호성·유기준·이시종·이윤성·이해봉·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윤호중·백원우·엄호성·배일도·안상수·김종률·김태년·우제창·김태홍·민병두·정성호·염동연·유선호·주승용·이원영·황우여·고조흥·김영춘·이호웅·조경태·박찬숙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이호웅·이해봉·정장선·문학진·우제창·이시종·김교흥·김성곤·황우여·조경태·배일도·김부겸·최인기·노현송·엄호성·안상수·강혜숙·신학용·신중식·박상돈·장경수·이윤성·문병호·강창일·신상진·유필우·김한길·김태홍·김종률·윤호중·김원웅·우원식·서재관·정성호·김재홍·정청래·이광철·김태년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심재엽·이계진·허천·박재완·김재경·김재원·임인배·류근찬·최재성·서병수·김명주·엄호성·정병국·고조흥·

정문헌・이해봉・박세환・최경환・이인기・허태열・최연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심재엽・최연희・홍문표・김학송・김재원・허천・박재완・김재경・김재원・임인배・류근찬・서병수・김명주・엄호성・정병국・고조흥・김춘진・정문헌・이해봉・박세환・박상돈・최경환・이인기・이계진・허태열・이명규・전여옥・박찬숙 의원 발의)

9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이주호・권오을・김명주・김양수・김정권・김재원・김희정・나경원・남경필・박승환・박재완・박형준・배일도・안홍준・엄호성・원희룡・이근식・이성권・이인기・이해봉・이혜훈・정문헌・정병국・진수희 의원 발의)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나경원・이계경・유승민・남경필・김재경・박순자・이인기・김충환・정화원・안상수・심재철・임태희・최경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이영호・한광원・이상배・이정일・신중식・우윤근・장경수・조일현・김우남・최성・염동연・이시종・윤원호・신학용・안병엽・김교흥・김기현・안홍준・안민석 의원 발의)

9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나경원・정두언・이계경・유승민・전병헌・남경필・김재경・황우여・이인기・김영춘・김충환・정화원・이근식・심재철・임태희・최경환・서상기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 의원 발의)

(2005. 9. 9 오영식 의원 외 144인 발의)

9월 13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쌀 관세화유예 연장협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2005. 9. 12 홍문표・김종률・박세환・유정복・이계진・장윤석・허천・서병수・변재일・이진구・이인기・김재원・박찬숙・신상진 의원 발의)

9월 1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9. 12 정부 제출)

이상 2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12 정부 제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5 . 9. 12 김성곤・김명자・김영춘・김재윤・박찬숙・백원우・서병수・심재철・안병엽・엄호성・유선호・이해봉・장복심・정성호・조성태・홍재형 의원 발의)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곽성문 의원 대표발의)

(2005. 9. 12 곽성문・박찬석・주호영・김재원・이성권・이명규・이성구・박창달・주성영・김석준・안택수・엄호성・배일도・송영선・정희수・이해봉・장윤석・박종근・정종복・이한구・강재섭・안상수・고조흥・허천・이인기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주성영・정성호・김광원・김재원・박세환・김재경・권오을・신상진・곽성문・김태환・임인배・허천・이근식・정종복・김성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05. 9. 12 정희수・김광원・엄호성・황우여・정문헌・김태년・유승민・황진하・김정권・이해봉・조일현・신상진・박상돈・권오을・고조흥・이진구・변재일・박형준・최경환・정병국・김무성・서병수・장윤석・이인

기・유기준・노현송・우제항・최규식・원혜영・강창일・맹형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5. 9. 12 김충환・이인기・이성권・이윤성・나경원・이병석・황우여・임인배・이경재・구논회 의원 발의)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김석준・이성권・김태환・고조흥・곽성문・이상배・안상수・박찬석・임인배・주성영・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9. 12 박찬숙・김재경・엄호성・안택수・김재원・이인기・박상돈・심재철・이해봉・안상수・김태년・신상진・최경환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5. 9. 12 장경수・이호웅・조경태・류근찬・김우남・김학송・장복심・이영호・박상돈・임종인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정화원・권철현・남경필・정종복・김무성・안명옥・이성권・엄호성・정의화・김병호・김희정・안민석・나경원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정화원・권철현・남경필・정종복・김무성・안명옥・이성권・엄호성・정의화・김병호・김희정・안민석・나경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5. 9. 12 장경수・강창일・이근식・안상수・노현송・이호웅・장복심・이원영・고조흥・조경태・이영호・박상돈 의원 발의)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발의)

(2005. 9. 12 김성곤 의원 외 144 인 발의)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12 정부 제출)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國有財産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5. 9. 12 김종률・엄호성・우제창・배일도・정성호・김태년・강혜숙・박찬숙・신상진・노현송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이해봉・배일도・이윤성・이근식・유기준・엄호성・심재철・안상수・정성호・고조흥・김재원・김태년・정병국・김석준・박찬숙・황우여・김광원・이인기・박종근・김희정・임인배 의원 발의)

法人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박영선・김한길・김태년・박기춘・우제창・조일현・정성호・박상돈・정청래・이근식・김재홍・송영길・엄호성・노현송・박명광・임종인・김태홍・김종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박영선・김한길・김태년・박기춘・우제창・조일현・정성호・박상돈・정청래・이근식・김재홍・송영길・엄호성・노현송・박명광・임종인・김태홍・김종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김효석・김충환・고진화・박상돈・신국환・심재덕・서재관・안상수・이시종・이인기・엄호성・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김효석・김교홍・김석준・김영춘・김태홍・노현송・박계동・박재완・박찬숙・배기선・심재철・서병수・안병엽・안상수・엄호성・우제창・정성호・황우여 의원 발의)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김현미・안영근・최재성・노영

민・임종석・김희선・이미경・전병헌・조경태・강창일・문석호・정청래・송영길・우상호・유인태・정봉주・선병렬・이은영・장향숙・정장선・한병도・윤호중・김낙순・김영주・이인영・김형주・이광철・조정식・백원우・정성호・홍미영・이경숙・김영춘・신학용・이상경・문학진・이근식・임종인・조성태・우원식・김덕규・한명숙・최규식・양승조・한광원・오영식・서재관・오제세・제종길 의원 외 96인 발의)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김석준・이성권・김태환・고조홍・곽성문・이상배・안상수・박찬석・임인배・주성영・서병수 의원 발의)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김석준・이성권・김태환・고조홍・곽성문・이상배・안상수・박찬석・임인배・주성영・서병수 의원 발의)

預金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오제세・이근식・엄호성・이인기・정성호・김태홍・최인기・김교홍・이해봉・박명광 의원 발의)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고진화・신국환・조승수・황우여・배일도・엄호성・김영춘・박명광・서재관・유기준・노현송・박찬숙・우제창・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11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6건)

(2005. 9. 13 소관 상임위원장(국회운영위 제외) 제출)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박세환・임태희・김기현・김명주・나경원・박순자・이명규・이재웅・정종복・서병수・황진하・이종구・이혜훈・이주호・진수희・주호영・김재경・김충환・이인기 의원 발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이재웅・임태희・김기현・김명주・나경원・박세환・박순자・이명규・정종복・서병수・황진하・이종구・이혜훈・이주호・진수희 의원 발의)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 건

(9월 14일 의장 제의)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27일간)

○의안 심사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

(2005. 8. 26 정부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2005. 7. 27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4. 7. 2 이영호・이정일・이강래・홍미영・김부겸・한화갑・문학진・이상열・노현송・권오을・김우남・백원우・김석준・안홍준・김춘진・김영덕・문병호・양승조・박상돈・강기정・이상배・박세환・조일현・최규성・오영식・한병도・김교홍・이상득・유시민・정병국・유선호・김용갑・김효석・이근식・김홍일・이인제・우윤근・정의용・이종걸・정청래・정종복・홍문표・류근찬・신중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05. 8. 31 김현미・안영근・최재성・노영

민・임종석・김희선・이미경・전병헌・조경태・강창일・문석호・정청래・송영길・우상호・유인태・정봉주・선병렬・이은영・장향숙・정장선・한병도・윤호중・김낙순・김영주・이인영・김형주・이광철・조정식・백원우・정성호・홍미영・이경숙・김영춘・신학용・이상경・문학진・이근식・임종인・조성태・우원식・김덕규・한명숙・최규식・양승조・한광원・오영식・서재관・오제세・제종길 의원 발의)

9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실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9.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3 서초월드오피스텔 1508호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황순재 외 4인으로부터 안명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인천국제공항철도 고양시구간 지하화 및 역사 신설에 관한 청원

(2005. 9. 2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97-2 이장성 외 2227인으로부터 최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9. 7 인천 중구 관동1가 9-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김기성 외 1534인으로부터 이재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

(2005. 9. 7 서울 종로구 혜화동 15-76 박경서 외 92인으로부터 지병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유선방송 보급형의 비용 등에 관한 질문서

(2005. 9. 1 김희정 의원 제출)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질문서

(2005. 9. 1 이계진 의원 제출)

유토로 문제해결에 관한 질문서

(2005. 9. 6 이광철 의원 제출)

민간에 대한 정부보유 인사파일 제공 등에 관한 질문서

주한미군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05. 9. 6 김성조 의원 제출)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질문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05. 9. 6 장향숙 의원 제출)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서

사이버인권배움터 등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05. 9. 8 김성조 의원 제출)

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와 파주 운정 신도시 확대계획에 관한 질문서

(2005. 9. 8 이재창 의원 제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자원봉사(사회공헌) 실적에 관한 질문서

(2005. 9. 12 안명옥 의원 제출)

2005년도 국정감사 사전준비에 관한 질문서 (2건)

(이상 2건 2005. 9. 12 우원식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감청실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5. 8. 31 정부 제출)

식품안보와 농작물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식품공전 고시개정 촉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05. 9. 7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05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8.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2005년도 연차보고서

(2005. 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2005년도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9. 2 정부 제출)

교육위원회에 회부

금융정보분석원 업무관련 통계자료 보고

(2005. 9. 8 금융정보분석원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